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4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6일
- 라. 상정일자 :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2011.12.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오승환)

가. 제안이유

- 현행 우리구 공단의 명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2012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변경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공단의 명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길어서 표기나 호명에 불편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변경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길어 변경해 달라는 공단 제45회 이사회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단 명칭을 변경한 것은 서울시 자치구 공단 명칭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16개구, 도시관리공단 6개구, 도시시설관리공단 2개구로 비교결과 다수 구가 사용하는 시설관리공단 명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91 호
----------	--------

제출연월일 : 2010.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우리 구 공단의 명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2012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현행 우리 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명칭이 길어 표기 및 호명에 불편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여 고객과의 접근성 강화 및 업무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같은 항 제13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를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정관에서”로 한다.

제 10조제 2항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 11조제 1항 중 “해당하는 자는”을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정지된 자”를 “정지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명당시”를 “임명 당시”로 하고,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퇴직전”을 “퇴직 전”으로 한다.

제 12조의 제목 “(임·직원의 겸직제한)”을 “(임직원의 겸직제한)”으로 하고, 본문 중 “직무이외”를 “직무 이외”로 한다.

제 13조제 3항 중 “임기동안”을 “임기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실비”를 “실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 14조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있었던 자는”을 “있었던 사람은”으로 하고, “직무이외”를 “직무 이외”로 하고,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한다.

제 16조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 1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를 “경우”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2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3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퇴직한 자”를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제5호의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기만료”를 “임기만료 및 ”으로 하고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을 “새로 임명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추천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추천된 자가”를 “추천된 사람이”로 한다.

제20조 중 “해당하는 자는”을 “ 해당하 는 사람 은”으로 하고 제1호의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2호의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이사장후보의 추천)”을 “(임원 후보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갖춘 자를”을 “갖춘 사람 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천하고자 하는”을 “추천할”로 하고,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때”를 “임원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하였을 때”로 하며, “통보”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3조 중 “이사장”을 “임원”으로 하고,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인정되는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단은”을 “공단이”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대행함에 있어”를 “대행할 때”로,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따른 비용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의하고”를 “따르며,”로 한다.

제2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7조의 제목“(계리원칙)”을“(회계처리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 계리하여야”를 “따라 회계처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를 “분리하여 회계처리”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확정된다”를 “확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 지체없이”를 “없다면 지체 없이”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종료후”를 “종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월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교부”를 “지급”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하지”를 “따르지”로 하고, 제2호의 “예입”을 “예금”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38조 후단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공포 하여야”를 “공포하여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의거 공단에 대한”을 “따라 공단의”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져야”를 “기관에서 행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에 대한”을 “공무원의”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의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 ----- ----- -----.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생략) ②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② ----- 따른 ----- -----.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 ----- 각 호-----.

현행	개정안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u>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u>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u>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정관에서</u> ----- -----.
제10조(감사) ① (생략) ②감사는 <u>정관이</u>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관에서</u> ----- -----.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u>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u>의하여</u>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공단의 임원이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u>임명당시</u> 그에 해당하는 <u>자</u>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u>의하여</u> 퇴직된 임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 ----- ----- <u>사람은</u> ----- -----. 1. ----- <u>사람</u> 2. -----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3. ----- ----- ----- ----- <u>사람</u> 4. ----- <u>따라</u> ----- <u>사람</u> 5. ----- ----- ----- <u>사람</u> ② ----- ----- <u>임명 당시</u> ----- ----- <u>사람</u> ----- -----. ③ ----- <u>따라</u> -----

현행	개정안
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퇴직 전 ----- ----- .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 직무 이외 ----- ----- ----- ----- ----- .
제13조(이사회) ①、② (생략)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 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⑤ (생략)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 이외 이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임기 동안 ----- ----- . ④ ----- . ----- 대해서는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실제 ----- 비용 ----- . ⑦ ----- 필요한 ----- -----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등) ----- 임 ----- 직원 ----- 사람은 ----- ----- 직무 이외 ----- 해서는 ----- .

현행	개정안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u>정관이</u>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 <u>정관에서</u> ----- -----.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제3호에서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u> (이하 “ <u>구의회</u> ”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 2. (생략)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생략)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공단은 임원의 <u>임기만료</u>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u>새로이 임명하고자</u>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u>추천위원회</u> 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8조(구성) ① ----- 각 호 ----- ----- -----. --- <u>경우</u> ----- <u>사람</u>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u> ---- ----- <u>사람</u> ---- -----. 1. ----- <u>사람</u> ---- 2. ----- <u>사람</u> ---- 3. ----- <u>사람</u> ----- ② ----- ----- <u>사람</u> -----. 1. ~ 2. (현행과 같음) 3. ----- <u>사람</u> 4. (현행과 같음) 5. ----- ----- <u>사람</u> ③ ----- <u>임기만료</u> 및----- ----- <u>새로 임명할</u> ----- ----- -----. ④ <u>위원회</u> ----- <u>사람이</u> ----- -----.

현행	개정안
<p>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지방공기업법」 제 6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u>자</u></p> <p>2. 공단의 <u>임·직원</u>(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의 공무원, 구의회 의원</p>	<p>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 ----- <u>사람은</u> ----- -----.</p> <p>1. ----- ----- <u>사람</u></p> <p>2. ----- <u>임직원</u> ----- ----- -----</p>
<p>제21조(회의) ① ~ ③ (생략)</p> <p>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1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범위에서</u> ----- -----.</p>
<p>제22조(<u>이사장후보의 추천</u>) 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u>자</u>를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u>추천하고자</u>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u>없는 한</u>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u>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u>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 1조의 규정에 <u>의한</u>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u>지체없이</u></p>	<p>제22조(<u>임원 후보의 추천</u>) ① ----- ----- ----- <u>사람을</u> ----- -----.</p> <p>② ----- <u>추천할</u> ----- ----- <u>없으면</u> ----- -----.</p> <p>③ ----- <u>임원 후보 추천대상자를</u> 의결하였을 때 ----- <u>통지</u> ----- -----.</p> <p>④ ----- ----- <u>따른</u> ----- ----- ----- ----- ----- ----- ----- ----- ----- <u>지체 없이</u> -----</p>

현행	개정안
<p>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3조(사무협조) 위원회는 <u>이사장</u>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3조(사무협조) ----- 임원 ----- ----- 위하여 ----- 인정하면 -----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 -----.</p>
<p>제24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p> <p>1. ~ 3. (생략)</p> <p>4.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과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대사업</p> <p>②동조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사업을 구청장이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4조(사업) ① ----- - 따른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 ② ----- 따라 ----- -----.</p>
<p>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p> <p>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1호는 「재래 시장 및 상</p>	<p>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p> <p>① ----- 그 밖의 ----- ----- 받아 ----- -----. ② 공단이 ----- 따른 ----- -- 대행할 때 ----- ----- 받아 ----- -----. ----- 위탁할 ----- -----.</p>

현행	개정안
<p>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 예외로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p>	<p>----- -----</p> <p>③ ----- 따른 비용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 따르며, ----- ----- -----.</p>
<p>제2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p>	<p>제26조(사업연도) ----- ----- 따 른다.</p>
<p>제27조(계리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p>	<p>제27조(회계처리 원칙) ① ----- ----- -----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p> <p>② ----- 분리하여 회계처리----- ----- 따른다.</p>
<p>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과 구</p>	<p>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 ----- 확정한다. ----- -----.</p> <p>② ----- ----- 지체 없이 -----</p>

현행	개정안
<p>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④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지체없이</u>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p> <p>③ ----- ----- 인정 되면 ----- --.</p> <p>④ ----- <u>없다면 지체 없이</u>----- ----- -----.</p>
<p>제29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p> <p>②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u>지체없이</u>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9조(결산) ① ----- ----- 해당 ----- 종료 후 ----- -----.</p> <p>② ----- ----- ----- <u>지체 없이</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0조(수입 및 정산) ①제24조에 의한 사업 수입금 및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비는 영등포구 세입으로 납부한다.</p> <p>②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p> <p>1. 2. (생략)</p> <p>3. 기타 재원</p> <p>③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불용액은 구회계에 반환하여야 한다.</p>	<p>제30조(수입 및 정산) ① ----- 따른 ----- <u>따른</u> ----- -----.</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의</u> -----</p> <p>③ ----- 2월 이 <u>내</u> ----- -----.</p>

현행	개정안
<p>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p> <p>1. 2. (생략)</p> <p>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p> <p>4. (생략)</p> <p>②, ③ (생략)</p>	<p>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 ----- <u>각호</u> ----- <u>따라</u> ----- ----- 1. 2. (현행과 같음)</p> <p>3. <u>정관에서</u> ----- <u>따른</u> ----- ----- 4. (현행과 같음)</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32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생략)</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p>	<p>제32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따른</u> ----- ----- ----- <u>인정하면</u> ----- ----- <u>지급</u> ----- -----</p>
<p>제33조(차입) ①, ② (생략)</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p>	<p>제33조(차입)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따른</u> ----- ----- <u>해당</u> -----</p>
<p>제34조(여유금의 운영) 공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p> <p>1. (생략)</p> <p>2. 금융기관에의 예입</p>	<p>제34조(여유금의 운영) ----- <u>각호</u> ----- <u>따르지</u> ----- ----- 1. (현행과 같음)</p> <p>2. ----- <u>예금</u></p>
<p>제35조(감독) ① (생략)</p> <p>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 (생략)</p>	<p>제35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대해서는</u> ----- ----- 1.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p> <p>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2.----- <u>임직원</u>----- ----- ----- -----</p> <p>3. <u>그 밖의</u> ----- -----</p>
<p>제36조(보고 및 검사)</p> <p>① (생략)</p> <p>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6조(보고 및 검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다음 달</u> ----- -----.</p>
<p>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공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u>지체없이</u>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 ----- ----- ----- ----- <u>지체 없이</u> -- 공표하여야 -----.</p>
<p>제39조(경영평가) ①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u>강구</u>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져야</u> 한다.</p> <p>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p> <p>2. 3. (생략)</p>	<p>제39조(경영평가) ①----- ----- <u>따라</u> 공단의 ----- ----- <u>따른</u>-----.</p> <p>② ----- <u>따른</u> ----- ----- <u>기관에서 행하여야</u> -----.</p> <p>1. ----- - <u>따른</u> -----</p> <p>2. 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4. 그 밖의 ----- -----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 (생 략) 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에게는 ----- ----- -----. ③ ----- 공무원의 ----- ----- 따라 ----- -----.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시행규칙) ----- 필요한 -----.